



부·당·청·구

장기요양기관

신고포상금 제도 안내



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
비밀보장·신분보장·신변보호를 통해
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.

부당청구 신고로 재정 누수 방지에
동참해 주세요.



신고 자격

- 전국민 누구나

신고 내용

-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, 부당행위

포상금

- 내부 종사자 **최대 2억 원**, 수급자 가족 등 기타 일반인 **최대 500만 원**
(신고 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)
 - 익명신고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.
 -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신고 방법

- **인터넷 접수**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
 - 실명/익명 신고 가능
- **내방·우편 접수**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운영센터) 어디서든
- **담당자 방문접수** : 인터넷·내방·우편 접수가 어려운 경우

상담전화

경기·인천

031-230-7914

